

올해 신규 토목공사 대거 쏟아진다

철도 5.8兆 중 5.2兆 물량 상반기에 풀어
수공도 작년보다 7배 늘어난 1.5조 발주
300억원 이상 도로공사 15건 안팎 될 듯

올해 토목공사 발주 물량이 전년에 비해 늘고 조기 집행됨에 따라 공공건설시장이 모처럼 활력을 되찾을 전망이다.

특히 철도분야에서 6조원에 가까운 일감이 쏟아져 올해 공공 토목시장을 이끌고, 이어 도로분야도 3조원을 상회하는 신규공사가 선보인다.

8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전년에 비해 올해 신규공사 발주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올해 SOC 예산을 늘린 데 따른 것으로, 조기 집행을 통해 경기 활성화를 위한 '골든 타임'을 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중 철도공단은 지난해를 약간 웃도는 총 5조8000억원에 달하는 신규 건설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5조2543억원 규모의 신규 노반 건설공사 30건을 모두 상반기에 쏟아내기로 했다. ▶관련기사 6면

앞서 올해 발주계획을 발표한 K-water도 지난해 2265억원(계약 기준)보다 무려 7배가량 늘어난 1조5263억원 규모의 건설공사 477건을 집행하기로 했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7400억원 규모의 420건은 상반기에 소화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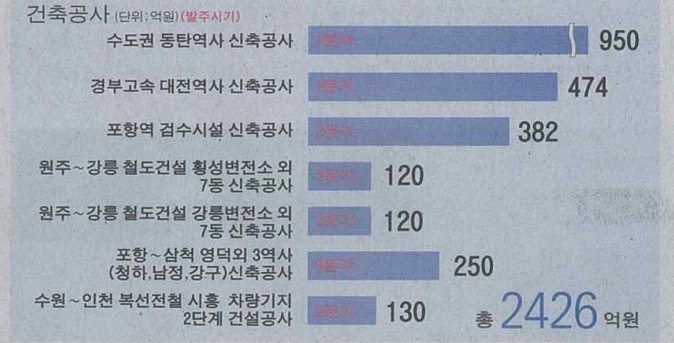
특히 100억원 이상 중대형 건설공사 발주 물량이 1조3307억원에 18건으로, 4대 강살리기 사업 이후 침체된 수자원분야의 일감 확보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다음주 올해 발주계획을 발표할 도공도 지난해 300억원 이상 건설공사 입찰 물량이 2건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15건 안팎으로 크게 늘어난다.

도공은 올해 광주순환고속도로 6개 공구(이하 총사업비 2825억원) 및 포항~영덕 고속도로 4개 공구(1조2240억원), 아산~천안 고속도로 5개 공구(1조1840억원) 신설과 남이~천안 고속도로 3개 공구 확장(4130억원) 외에 창녕~밀양 고속도로 6개 공구 신설(1조3035억원)을 신규사업으로 선보인다.

도공 관계자는 "아직 올해 발주물량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이 중 75%가량을 올해 신규공사로 발주할 방침"이라며 "다만 올해 받은 예산이 노선별로 200억원 이하라 입찰공고는 하반기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철도시설공단 2015년 주요 신규공사 발주계획



이처럼 공공 토목시장을 이끄는 3대 발주처가 올해 발주물량을 확대함에 따라 건설업계도 기대감이 높다.

대형사 관계자는 "4대강살리기 이후 토목공사 발주가 급감하고, 무더기 부정담업자 제재 처분과 과징금으로 관련업

계가 힘겨운 시대를 보냈다"며 "하지만 올해는 공공 토목공사 발주 확대에 따른 중공현장을 대체할 신규 현장을 확보해 인력 운영에 숨통이 트이고, 침체된 시장 분위기도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채희찬기자 chc@

하도급계약 '부당특약' 무효 조항 신설

공정위, 건설 등 9개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원-하도급사 모두 인정해야 '계약변경' 가능해져

표준 하도급계약서와 상충되거나 하도급법·공정거래법 등에 위배되는 특약은 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또 계약변경은 객관적으로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모두 인정할 때만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건설,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등 9개업종의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개정했다

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특히 부당특약의 무효 조항을 마련했다. 업종별 특성에 따라 표준 하도급계약서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특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도급법의 내용이 표준 하도급계약서와 배치되고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효력을 잃도록 규정했다.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부당특약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계약변경 조건도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공정위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있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만 계약변경이 가능하도록 해 계약의 안정성을 강화했다. 또 계약변경 과정에서 수급사업자가 계약변경 전 수행한 부분에 대해 원사업자가 이를 정산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원사업자의 지시로 수급사업자가 추가 가공한 물량에 대해선 발주자로부터 공사비를 중액받지 못하더라도 원사업자가 지급하도록 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관련 규정도 정

비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로 하여금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급사업자도 계약이행보증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어음이나 기업구매 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구매론 등 어음 대체 결제수단으로 대금을 지급할 때는 보증기간을 어음 만기일 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 확대해 원활한 대금 지급을 유도하기로 했다. 박경남기자 knp@ ▶2면에 계속

토·일요일자 신문 쉽니다

1면서 계속=하도급계약 '부당특약' 무효 조항 신설

공정위는 또 원사업자가 안전관리비를 책정하고 수급사업자는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을 원사업자에게 통보하는 한편 사용하지 않고 남은 안전관리비는 원사업자에게 반환하도록 규정했다. 이 외에도 원사업자의 기술을 기초로 수급사업자가 개량기술을 개발한 경우 해당 기술은 수급사업자가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표준 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을 관련 단체에 요청하는 등 표준 하도급계약서가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공정위는 표준 하도급계약서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협약 평가 때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에 대한 배점을 8점에서 12점으로 상향 조정할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 하도급계약서

의 사용에 따라 하도급거래 질서가 확립되고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시운전 비용 부담, 원사업자의 기자재 공급 지연으로 인한 이행지체 면제 등의 내용을 담은 계약양플랜트 업종의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해 공정위 홈페이지(www.fic.go.kr)에 게시했다. 박경남기자

